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## 제 목 `24년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

---

1. 환경부 교통행정과-3626(2023.12.28.)와 관련입니다.

2. 「대기관리권역법」 제28조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(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)내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.

**※ 다만, 법 시행전(2023년12월31일 이전까지)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.**

3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신규로 경유차를 전기,LPG차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`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12월까지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아래와 같은 경과 조치를 추진 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법 시행 전(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)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하려는 자

-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

※ 법 시행전(`24.1.1 이전) 경유차를 소유하고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사용자(계약자)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가능(**붙임 주요사례 참조**)

나. 2024년 01월 01일 이후 신규(양수)로 경유차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려는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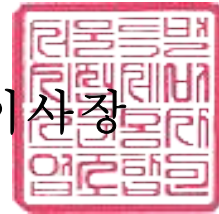
- 전기·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'24.6월까지'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시 승인(조건부 승인) ※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
- 양도양수(소유자 변경)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 
2024년 이내 환경부와 법률 자문 또는 법개정을 통해 개선추진 예정

※ 관련내용 중 의문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적용 주요 사례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  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260호 ( 2023.12.28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